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 (제27조 관련)

구분	종류 및 재질	재활용기준비용
1. 제18조제1호에 따른 포장재	가. 종이팩	kg당 185원
	나. 유리병	kg당 34원
	다. 금속캔	
	1) 철캔	kg당 87원
	2) 알루미늄캔	kg당 151원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 발포폴리스티렌(EPS)·발포폴리프로필렌(EPP)·발포폴리에틸렌(EPE)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kg당 317원
2) 폴리염화 비닐(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kg당 981원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 포장재		
가) 단일재질 무색	kg당 178원	
나) 단일재질 유색	kg당 235원	
다) 복합재질	kg당 360원	
4)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재질 용기류 및 트레이	kg당 327원	
5) 1)부터 3)까지 외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kg당 467원	
6) 1)부터 5)까지 외의 복합재질 포장재	kg당 467원	
2. 제18조제2호에 따른 포장재	가. 발포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완충재	kg당 317원
	나.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	kg당 467원
3. 제18조제3호에 따른 포장재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제품	단일·복합재질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재질 [폴리염화 비닐(PVC)은 제외한다] 필름류	kg당 467원
4. 제18조제4호에 따른 제품	가. 수은전지	g당 39.6원
	나. 산화은전지	g당 35.5원
	다. 니켈카드뮴전지	g당 0.78원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g당 0.8원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바. 니켈수소전지	g당 0.16원
5. 제18조제5호	타이어	kg당 30원

에 따른 제품		
6. 제18조제6호 에 따른 제품	윤활유	ℓ 당 20원
7. 제18조제7호 에 따른 제품	가. 형광등 나. 발광다이오드 조명 1) 전구형(電球形) 2) 직관형(直管形) 3) 평판형(平板形)	개당 143원 kg당 1,100원 kg당 900원 kg당 600원
8. 제18조제8호 에 따른 제품	수산물 양식용 부자	kg당 627원
9. 제18조제9호 에 따른 제품	곤포(뭉치) 사일리지용 필름	kg당 527원
10. 제18조제10 호에 따른 제품	합성수지재질 김발장	kg당 545원
11. 제18조제11 호에 따른 제품	가. 산업용 필름 나. 교체용 정수기 필터 다. 안전망 라. 어망 마. 로프 바. 폴리에틸렌 관 사. 폴리염화비닐 제품 아.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자. 파렛트 차. 플라스틱 운반상자 카. 창틀·문틀 타. 바닥재 파. 건축용 단열재 하. 전력·통신선 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kg당 527원 kg당 404원 kg당 545원 kg당 545원 kg당 545원 kg당 527원 kg당 527원 kg당 327원 kg당 427원 kg당 427원 kg당 607원 kg당 607원 kg당 645원 kg당 685원 kg당 527원

※ 비고

1. 제1호나목의 경우 용기의 뚜껑데가 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2. 제1호다목의 경우 뚜껑분리형으로 출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기준비용을 위 표의 2배로 한다.
3. 제1호의 포장재의 중량은 뚜껑·마개 등 부분품의 재질과 관계없이 부분품의 중량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한다.
4. 제6호의 윤활유는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기어유만 해당한다.

5. 위 표에서 "복합재질"이란 합성수지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한다. 다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병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외의 재질의 중량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병(뚜껑, 라벨 등 부분품은 제외한다)의 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